

# 헌법집중(전정4판) 추록

P 086 1. 단락 본문 첫째 줄 ② 내용 대체 (2024. 3. 공직선거법 개정\_지역구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조정)

② 헌법 제41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이를 구체화한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4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165 세 번째 판례박스 대체 (최신판례 반영)

태아 성감별 제한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적극) ▶ 2024.2.28. 2022헌마356등 [위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와 같은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수단으로서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할 단계는 성별고지가 아니라 낙태행위인데,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P 225 각주 124) 내용 대체 (대법원 판례 반영)

124) 한수웅, 헌법학 제4판, 637면 참조. 참고로 헌법상 ‘인신구속시 접견교통권’을 종합하면, ① ‘피구속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의 경우, 피구속자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포괄되는 헌법상 기본권이고(1992.1.28. 91헌마111),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은 피구속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는 기본권으로 볼 수 있으며(2022.6.30. 2021도244), ② ‘피구속자와 비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의 경우, 피구속자의 접견교통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고, 가족 등 타인의 접견교통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2003.11.27. 2002헌마193).

## P 226 각주 126) 내용 대체 (대법원 판례 반영)

126) 헌법재판소는 종래 “변호인 자신의 접견교통권은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고 판시하였으나(1991.7.8. 89헌마181), 이후 “변호인의 조력권 중 변호인의 변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고(2003.3.27. 2000헌마474; 2017.11.30. 2016헌마503), 최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2019.2.28. 2015헌마204). 한편 대법원은 “미결수용자가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그와 표리 관계인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접견교통권과 함께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결정, 헌법재판소 2019.2.28. 2015헌마1204 결정 등 참조)” 고 판시하였다(2022.6.30. 2021도244).\*

## P 335 제1절 본문 내용 대체 (내용 중복 수정)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권은 **실정법상 권리**로서 법률에 의해 행사절차가 구체화되어야 하므로 **입법자의 형성권**이 인정되며, 기본권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이므로 외국인이나 단체도 그들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영역에서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